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2020.2.21. 조간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	<b>담 당 자</b>	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14)	

**제 목 :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 
입법예고 실시 ('20.2.21.~'20.4.1.)**

■ 「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」('19.12.24일 발표)의 후속조치로  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

-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「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, 저축은행에서 은행, 보험사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. (안 제47조제2항)
  -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'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'로 개선합니다. (안 제2조제2호 등)
- '휴면예금'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'휴면금융자산'으로 변경하고, '소멸시효 완성' 요건을 삭제

③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.

-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(안 제42조의2),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(안 제44조),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(안 제45조의2) 등

④ 재원관리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합니다.

-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(자활지원 계정 신설)으로 분리(안 제40조, 제55조의2 등)
-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,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·운영위원회 대표성 강화(안 제9조, 제20조의2)

□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 후 올해 6~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
※ [별첨] 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